

정 관

2026. 04. 17. 제정

살아있는 과거, 그리고 내일

장생탄광희생자 귀향추진단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 단체는 장생탄광희생자 귀향추진단(이하 “추진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

추진단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장생(조세이)탄광에서 희생된 조선인 희생자들의 유해 수습 및 유골 귀향, 신원 확인과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시킴과 더불어 이를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고, 역사적 정의 실현과 한일 간 인권 기반의 평화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

1. 추진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① 장생탄광 수몰사고 관련 진상 조사 및 연구와 관련된 제반활동
 - ②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과 관련된 제반활동
 - ③ 희생자 유골 귀향 및 추모사업
 - ④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활동
 - ⑤ 한일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의 연대 활동
 - ⑥ 학술회의, 문화제, 토론회, 전시, 교육 등 기록화 사업
 - ⑦ 정부·국회·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에 대한 정책 제안 및 협력 사업
 - ⑧ 기타 추진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2. 제1항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

제4조(사무소)

추진단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며,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 또는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2장 회원

제5조(회원의 자격 및 구분) 추진단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.

1. 정회원 : 추진단의 목적에 동의하고 운영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치고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
2. 후원회원 : 재정적 또는 물질적으로 추진단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
3. 특별회원 : 학계, 시민사회, 국제사회 등에서 추진단 활동에 협력하는 인사

제6조(회원의 가입)

1. 회원은 추진단의 목적에 동의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가입한다.
2. 제1항에 의하여 회원가입을 인정받은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은 1개월 이내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

제7조(회원의 권리)

1.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2. 모든 회원은 추진단의 활동에 참여하고 자료 제공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제8조(회원의 의무)

1. 정관 및 총회 결의사항 준수의 의무
2. 추진단의 목적 실현을 위한 협력할 의무
3. 회비 납부의 의무

제9조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
1.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2. 추진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
제3장 기구 및 임원

제10조(기구) 추진단은 다음의 기구와 임원을 둘 수 있다.

1. 총회
2. 운영위원회
3. 사무처
4. 지부
5. 자문위원회
6. 대표 및 공동대표
7. 감사

제1절 총회

제11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추진단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12조(총회의 구분과 의결 및 소집)

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2. 총회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3.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,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대표가 소집하고, 필요 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.
4.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안건, 장소, 일시 등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3조(총회의 권한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정관의 제정 및 개정
2. 대표, 공동대표, 감사 선출 및 해임
3.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
4. 결산 승인
5. 단체 해산

6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2절 운영위원회 및 사무처

제14조(운영위원회 구성과 권능)

1. 운영위원회는 대표, 공동대표,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2. 운영위원은 대표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임명한다.
3. 운영위원회는 대표가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을 맡되,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공동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될 수도 있다.

제15조(운영위원회의 권한)

1.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업무 집행
2. 회원 가입 및 제명 승인
3. 사무처 운영
4. 총회에 부의할 안건 결정
5. 재산관리
6. 자문위원회 구성
7. 추진단 사업 집행에 필요한 사항 중 총회 의결사항을 제외한 사항

제16조(사무처)

1. 추진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둔다.
2. 사무처는 직능별로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.
3. 사무처의 조직 및 보수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.

제3절 지부 및 자문위원회

제17조(지부)

1. 추진단 산하에 광역시도별, 해외 등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한다.

제18조(자문위원회)

1. 추진단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다.
2. 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직무와 권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4절 임원

제19조(대표)

1. 추진단은 대표와 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.
2. 대표는 추진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3. 공동대표는 대표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며, 대표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공동대표 중 최고 연장자가 소집한 운영위원회에서 공동대표 중 1인을 대표 권한대행으로 선출하고 선출 후 개최되는 최초의 총회에서 그 선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는다.

제20조(감사)

1. 추진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.
2. 감사는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.

제21조(사무처장)

사무처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가 임명하며, 당연직 운영위원으로서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대표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.

제4장 재정

제22조(재원) 추진단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회원의 회비
2. 후원금 및 기부금
3.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금
4. 사업 수익금
5. 기타 수입금

제23조(회계연도)

추진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24조(사업계획 및 예산편성)

추진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하되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5조(결산승인)

결산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

제26조(회계 공개)

추진단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연 1회 이상 회계 내역을 공개한다.

제5장 보칙

제27조(정관 개정)

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8조(해산)

추진단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9조(잔여재산의 관리)

추진단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단체에 귀속한다.

제30조(기타 규정)

추진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
1.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창립 당시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.